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연구



연 구 진

김상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정찬 (송실대학교 객원교수, 입법 Q&A 대표)

연구 요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 정책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기본법 개정의 필요성 증대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되어 2006년부터 시행
 - 자원봉사활동의 개념 및 형태의 변화·확대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정책적·사회적·환경적 측면에서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큰 변화 없이 일부수정만 이루어지는 등 여러 가지 한계점을 노출
 -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여 민·관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확대될 수 있는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대두
 - 이에 2016년 10월 이명수 의원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함에 이어 김광수 의원과 민경욱 의원도 각각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을 위한 요구가 확대되어 왔음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전면개정에 대비한 시행령안 마련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전면개정에 대비한 실효성 높은 동법 시행령안 마련
 - 국회에서의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전면 개정에 대비하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안, 김광수의원안·민경욱의원안 및 정부수정의견 반영)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되는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동법 시행령의 작성

2.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제언

주요 내용별 하위법령 정비방안 도출

○ 기본법 개정 방향에 따른 시행령안의 3대 핵심 요인

① 자원봉사 거버넌스·인프라 강화

- 자원봉사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무위원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조직 및 운영
- 국가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실태조사
-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전담기구 지정
-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

② 지역사회주도 풀뿌리 자원봉사강화

- 자원봉사센터: 중앙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중앙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국·공유재산 사용(자원봉사센터가 정하는 사업 유형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국·공유재산 사용 명시), 기부금품 접수 특례(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생략) 등
- 지역기본계획 및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③ 기타

추후 기본법 개정안의 확정에 따른 하위법령 수정 필요

○ 본 연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위해 상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을 그 근거로 하여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목적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행령 각 조문은 기본법개정안의 각 조문을 근거로 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심의중인 기본법 개정안이 수정되거나, 다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관련 개정 내용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하위법령도 함께 수정되어야 할 것임

차 례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4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6
제2장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하위법령 위임사항	9
제1절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연혁	11
1. 1994년~2004년	11
2. 2005년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	12
제2절 하위법령 정비기준으로서의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14
제3절 하위법령 위임 내용 분석	20
1. 대통령령으로의 직접 위임	20
2. 핵심 내용	23
제3장 주요 내용별 하위법령 정비방안	27
제1절 자원봉사 거버넌스·인프라 강화	29
1. 목적	29
2. 자원봉사진흥위원회	30



3. 국가기본계획	43
4. 시행계획	49
5.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54
6. 실태조사	56
7.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	65
8.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	74
9.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78
10.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87
11. 한국자원봉사협의회	91
제2절 지역사회주도 풀뿌리 자원봉사 강화	98
1. 자원봉사센터	98
2. 국·공유재산 사용	107
3. 기부금품 접수 특례	110
제3절 기타	114
1. 포상	114
2.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116
3.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	118
4. 위임 및 위탁	121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22
6. 부칙	124
제4장 결론	125
제1절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27





제2절 제언 140

【참고문헌】 141

표 차례

<표 2-1>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조문구성 비교	16
<표 2-2>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주요 개정사항	17
<표 2-3> 시행령 조문 비교표	24
<표 3-1> 목적 조문 비교표	30
<표 3-2> 자원봉사진흥위원회 구성 시행령 조문 비교표	40
<표 3-3>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운영 시행령 조문 비교표	41
<표 3-4> 국가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의 구성 시행령 조문 비교표	42
<표 3-5> 국가기본계획 관련 시행령 조문 비교표	49
<표 3-6> 연도별 시행계획 관련 시행령 조문 비교표	53
<표 3-7> 관계기관 등의 협조 관련 시행령 조문 비교표	55
<표 3-8> 실태조사 시행령 조문 비교표	64
<표 3-9>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 시행령 조문 비교표	74
<표 3-10>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 시행령 조문 비교표	78
<표 3-11>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시행령 조문 비교표	85
<표 3-12>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시행령 조문 비교표	90
<표 3-13>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시행령 조문 비교표	96
<표 3-14>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시행령 조문 비교표	104
<표 3-15>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관련 시행령 조문 비교표	105
<표 3-16> 국 공유재산 사용관련 시행령 조문 비교표	110





<표 3-17> 기부금품 접수 특례관련 시행령 조문 비교표	112
<표 3-18> 포상 시행령 조문 비교표	115
<표 3-19> 자원봉사자의 날 시행령 조문 비교표	117
<표 3-20> 자원봉사자의 보호 시행령 조문 비교표 ..	120
<표 3-2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행령 조문 비교표 ..	123
<표 3-22> 부칙 비교표	124

그림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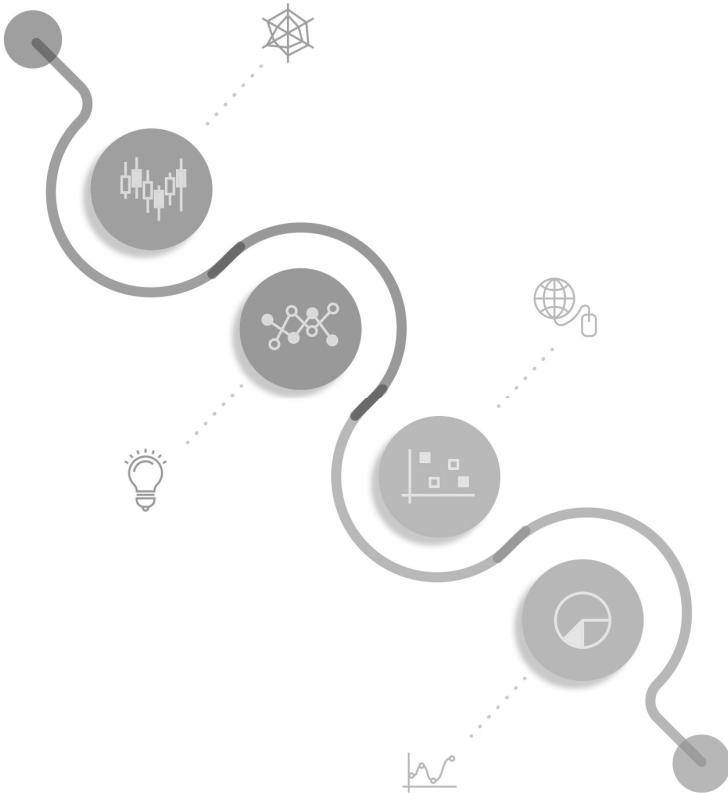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림 1-1> 연구흐름도	7
<그림 3-1> 1365 자원봉사포털 홈페이지	66
<그림 3-2> 한국자원봉사협회의외의 5대 정책영역 및 4대 사업영역	92
<그림 3-3> 연도별 자원봉사센터 운영형태	98
<그림 3-4> 자원봉사센터 연도별 근무인원 추이 및 2016년도 근무인원	99
<그림 3-5> 자원봉사센터 연도별 예산액 및 2016년 예산비율	100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자원봉사활동 개념 및 형태 확대

- 자원봉사활동의 개념은 초기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최근에는 지식 및 나눔을 기반으로 하는 영역까지 포괄하는 등 그 개념과 영역이 확대
 -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2013~2017)은 자원봉사를 ‘무급의 노동시간을 제공하며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설명하면서 노동집약적 자원봉사와 금전집약적인 기부를 구분
 - 그러나 일반 자원봉사와 달리 재능을 가진 봉사자가 자원봉사를 실시하는 “재능나눔형 자원봉사”나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을 활용한 “재능기부” 등을 포괄하는 영역까지 확대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대두(행정자치부, 2015)
- 이와 함께 자원봉사 활동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1365 자원봉사포털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자원봉사 참여도 확대
 - 2014년 기준 1365자원봉사포털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인원은 총 10, 294,144명이며, 2014년에 1회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한 인원수는 총 3,174, 876명
 - 즉 온라인을 기반으로한 자원봉사 활동의 확대가 주목할 만한 변화로 대두

□ 정책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기본법 개정의 필요성 증대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되어 2006년부터 시행

- 자원봉사활동의 개념 및 형태의 변화·확대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정책적·사회환경적 측면에서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큰 변화 없이 일부수정만 이루어지는 등 여러 가지 한계점을 노출
 - 대표적으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문제,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위상 및 기능강화 필요성,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역할 재정립 요구, 자원봉사포털의 법적 근거 부재 등
 - 무엇보다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여 민·관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확대될 수 있는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대두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전면개정을 위한 국회 법안 심사 절차 진행

- 이에 2016년 10월 이명수 의원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함에 이어 김광수 의원과 민경욱의원도 각각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을 위한 요구가 확대되어 왔음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전부개정안(이명수·김광수·민경욱 의원안 및 정부 수정요구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 심사 절차에 돌입

2. 연구목적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전면개정에 대비한 시행령안 마련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전면개정에 대비한 실효성 높은 동법 시행령안 마련
 - 국회에서의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전면 개정에 대비하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안, 김광수의원안·민경욱의원안 및 정부 수정의견 반영)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되는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동법 시행령의 작성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전면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하위법령 입법요구 분석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연혁 및 전면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 분석
 - 하위 법령 주요 위임내용 분석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연구 범위를 설정하고, 위임하지 않았더라도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은 연구의 범위에 포함

- 주요 내용별 하위법령 정비방안 도출
 - 기본법 개정안이 현행 20조에서 30조로 전면 개정됨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역시 늘어날 전망
 - 현행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은 1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직접 위임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에 따른 시행령 조문은 최소 19개임
 - 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제명의 간소화(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자원봉사 기본법), ② 자원봉사 영역 확대 및 활동여건 개선, ③ 지역 자원봉사 조직·재정 확충을 통한 풀뿌리 자원봉사 강화, ④ 자원봉사 거버넌스 및 인프라 강화
 - 기본법 개정 방향에 따른 시행령안 주요 변경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 3가지 핵심 내용으로 정리가능
 - ① 자원봉사 거버넌스·인프라 강화
 - 자원봉사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무위원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조직 및 운영

- 국가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실태조사
-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전담기구 지정
-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
- ② 지역사회주도 풀뿌리 자원봉사강화
 - 자원봉사센터: 중앙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중앙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국·공유재산 사용(자원봉사센터가 정하는 사업 유형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국·공유재산 사용 명시), 기부금품 접수 특례(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생략) 등
 - 지역기본계획 및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 ③ 기타
- 주요 내용에 대한 시행령 정비방안 도출

2.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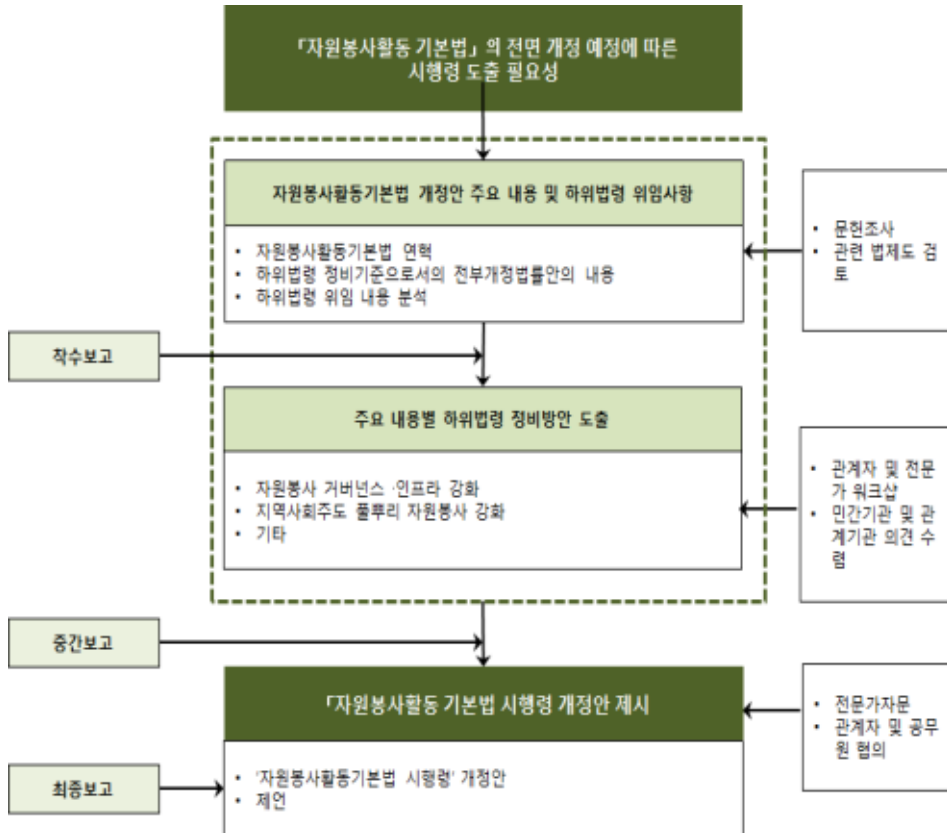
관련정책 및 문헌검토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 관련 선행연구, 문헌 및 각종 자료 검토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시행령 관련 법 및 제도, 관련계획 등 중앙부처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여건분석 및 제도 검토

관계자 및 전문가 워크숍

-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워크숍을 실시하여 주요 법률안 내용에 대한 브레인 스토밍 및 시행령안 마련
- 자원봉사 관련 민간기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성 및 적용성 증진

<그림 1-1> 연구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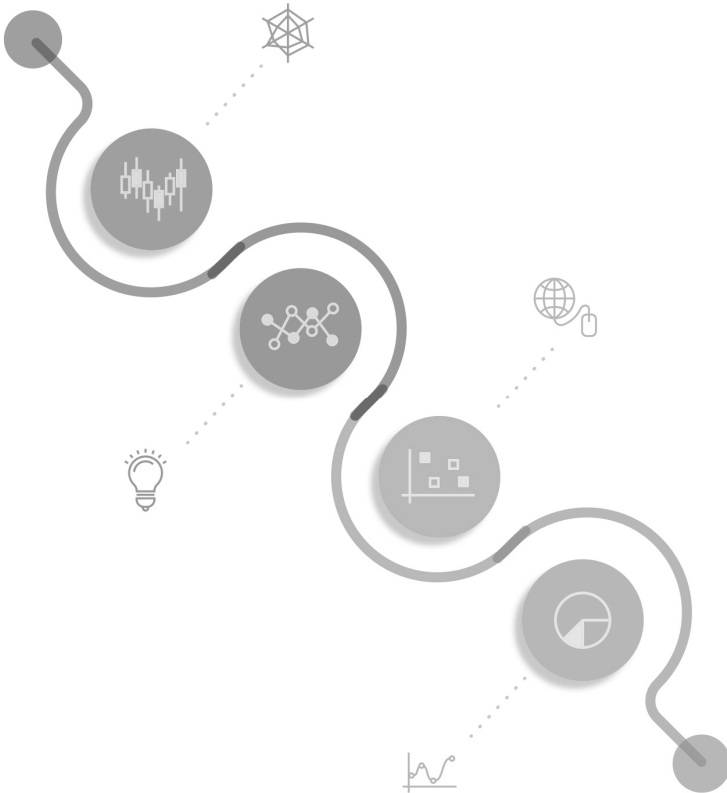


제2장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하위법령 위임사항

제1절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연혁

제2절 하위법령 정비기준으로서의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제3절 하위법령 위임 내용 분석



제 2 장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하위법령 위임사항

제1절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연혁

1. 1994년~2004년

- 자원봉사와 관련된 최소의 법안마련 노력은 1994년 8월 민자당 정책위에서 발표한 ‘자원봉사법안’
 - 이후 1994년 10월 정기국회 시 민자당(여당)과 민주당(야당이) 각각 독자법안을 제출
 - 이때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건의문을 제출
 - 주요 안건은 순수 자원봉사 지원법과 선거자원봉사법의 구별, 자원봉사에 대한 바른 개념 명시, 자원봉사자를 위한 보험제도, 자원봉사 법안에 대한 기본이념과 개념, 조직 구성과 운영, 기금조성, 선거자원봉사 포함 여부에 대한 각 당의 입장 비교와 협의회 의견 제시 등으로 구성
- 1994년 11월 21일 남평우의원이 「공익자원봉사진흥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나, 14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 자원봉사활동과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수요자 등을 정의
 - 중앙 자원봉사진흥위원회와 지역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립
 - 자원봉사를 원하는 자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음 등의 조문 포함
- 1994년 12월 1일 박상천의원이 대표발의 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 역시 14대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 자원봉사활동과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수요자 등을 정의
 - 자원봉사기금 설치, 자원봉사재단설립 등에 관한 조항 포함
- 1998년 3월 ‘자원봉사활동지원법’제정이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

- 1998년 6월~11월까지 행정자치부에서 법제정자문위원회 구성하여 법안 기초 마련
- 주요 내용은 ‘전국자원봉사센터’와 ‘지역자원봉사센터’의 설치에 관한 것이었으나, 결국 무산
- 2001년 10월 17일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 한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
 - 자원봉사활동과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수요자의 정의, 지역자원봉사센터와 전국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정의 등을 포함
 - 16대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 2003년 11월 7일 전갑길의원이 대표발의 한 「자원봉사진흥법안」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의, 지자체 장의 자원봉사센터 설립·운영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16대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 2004년 11월 10일 정부는 17개 조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을 제안하였으나, 2005년 6월 대안반영 폐기
- 2005년 4월 6일 고경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봉사활동 진흥기본법안」
 - 자원봉사활동과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퇴직자 자원봉사 정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진흥기금 설치 등을 포함하였으나 2005년 6월 대안반영 폐기

2. 2005년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

- 2005년 6월 29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안」 제안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5년 6월 13일)에서 자원봉사활동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 2004년 제안된 정부법안(「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과 2005년 고경화의원 대표발의안(「자원봉사활동 진흥기본법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안」 제안
 - 2005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8월 4일 공포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2006년 2월 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령 또한 대통령령 제 19318호로 다음날인 2월 6일 공포 시행
- 이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4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정부조직 변화의 반영과 자구수정 수준에 그침(조용혁, 2015; 행정자치부, 2015)

제2절 하위법령 정비기준으로서의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본칙 총 2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본칙 6개의 장과 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는 “자원봉사 기본법”으로 개편
 - 주요 개정 방향은 크게 사회변화를 반영한 자원봉사 영역 확대, 지역사회 주도의 풀뿌리 자원봉사 강화, 시민사회 주도의 거버넌스 정립과 인프라 강화에 초점(행정안전부, 2017)
- 사회변화를 반영한 자원봉사 영역 확대
- 법률명칭 개정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 자원봉사 기본법
 - 자원봉사 “활동”에 국한된 법률이 아닌 자원봉사 생태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 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률명칭 변경
 - 자발적 시민활동을 규율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보장
 - 자원봉사의 정의에 재능봉사 포함
 - 종전의 시간과 노력 외에 재능, 전문지식 및 기술의 제공을 포함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
 - 기업의 임직원 자원봉사활동 장려와 자원봉사문화 확산 노력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의무를 규정
 - 온라인 자원봉사의 법적 근거 마련
 -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SNS·인터넷 활용) 온라인 자원봉사 추가
 - 자원봉사주간 지정 개선
 - 시민사회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통령령으로 자원봉사주간 (○월 ○째 주간) 지정(현행 12월 5일부터 1주, 평균기온 1.7℃로 활동 제약)

□ 지역사회 주도의 풀뿌리 자원봉사 강화

○ 자원봉사센터 민간화

- 2019년까지 3년간 경과규정을 두되, 2020년 이후 민간위탁이나 법인설립의 방법으로 운영을 민간화
-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복무와 상근인원 최소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 자원봉사센터의 공유재산 사용

-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

○ 시·군·구의 자원봉사단체 사업비 보조 근거 마련

- (현행)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행자부와 시도만 지원 가능
- (개선) 시·군·구도 지원할 수 있게 하여 풀뿌리 자원봉사를 강화

○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심사절차 제외

- 기부심사위 심의 절차를 생략하여, 재난구호 등에 신속하게 대응

□ 시민사회 주도의 거버넌스 정립과 인프라 강화

○ 자원봉사진흥위원회 확대·개편

- 현행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명칭을 국가자원봉사진흥위원회로 개정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

○ 국가계획과 지역계획 수립 병행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원봉사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시행계획 수립과 이행결과 평가 내실화

- 일부 중앙행정기관 →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평가하고, 평가결과의 심의와 통보·공표, 개선 권고 및 인센티브를 규정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기능 강화

- 협의회 활동에 교육 기능을 추가하고 사업비 지원 규정을 신설

- 1365자원봉사포털의 법적 근거 마련
 -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의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고, 실적정보를 관리·인증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자 이용편의 제고를 위하여 운영 전담기관을 지정
-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 지원
 - 전문교육기관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역량개발 및 정책·사업의 연구개발 강화

<표 2-1>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조문구성 비교

현 행	개 정 안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자원봉사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기본 방향)	제2조(기본원칙)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2장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제8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제8조(국가자원봉사진흥위원회)
	제9조(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제3장 자원봉사정책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자원봉사진흥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제11조(자원봉사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2조(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결과의 평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실태조사)
	제4장 자원봉사 지원 및 촉진
제11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제14조(학교와 기업의 자원봉사 장려)
제12조(포상)	제15조(포상)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제16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제17조(자원봉사자의 보호)
	제18조(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형의 감면)
제15조(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제19조(자원봉사자의 지원)
	제20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1조(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
	제22조(교육훈련 지원)
	제23조(연구개발 지원)
제16조(국유·공유 재산의 사용)	제24조(국유·공유 재산의 사용)
	제25조(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제5장 자원봉사지원조직 등
제17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제26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제27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장 보칙
	제29조(위임 및 위탁)
제20조(벌칙)	제30조(벌칙)

<표 2-2>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주요 개정사항

구 분	구 분
(1) 법률제명 변경 및 목적정의규정 정비 등	① 법률제명
	② 목적규정

구 분	구 분
	③ “자원봉사활동”을 “자원봉사”로 용어 변경 및 개념 정비
	④ “자원봉사센터”의 개념 정비
	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비
(2)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자원봉사 인정 근거 명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참여 및 지원 활동이 자원봉사에 포함됨을 명시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등 정비	① 학교와 기업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추진 책무 신설 ② “기업”의 자원봉사 장려 등 명시
(4)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가-지역 계획체계 및 조직체계 확대개편 등	① 국가-지역 자원봉사진흥계획 수립·시행 체계 확대개편 등 ② 자원봉사 관련 실태조사 근거 마련 ③ 국가-지역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체계 구축
(5) 자원봉사 중 범한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형의 감면 근거 신설	자원봉사 중 범한 과실치사상죄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형의 임의적 감면 근거
(6)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근거 마련	① 자원봉사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② 자원봉사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 지정 근거 마련
(7) 교육·훈련·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한 근거 마련	①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 근거 마련 ② 자원봉사 관련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연구기관 지정 근거 마련
(8)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정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의 법적 근거 변경
(9)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기능 강화 및 사업비 지원 근거 신설	① 자원봉사 지도자·관리자에 대한 리더십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기능 추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10) 자원봉사센터 체계 정비	자원봉사센터 체계를 중앙자원봉사센터-지역자원봉사센터로 정비
(11) 자원봉사센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직영근거 삭제 등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직영근거 삭제(일괄 민영방식 전환)

구 분	구 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한 책무 및 경비 지원 근거 정비
(12)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대여·사용 근거 등 마련	①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의 무상대여 및 사용 근거 신설
	② 자원봉사센터의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특례(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생략) 근거 마련

제3절 하위법령 위임 내용 분석

1. 대통령령으로의 직접 위임

- 국가자원봉사진흥위원회(안 제8조)
 - ⑥ 국가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실태조사(안 제13조)
 - 제13조(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원봉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포상(안 제 15조)
 - 제15조(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법인, 단체, 기관, (기업)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안 제16조)
 - 제16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며 자원봉사문화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을 설정한다.
- 자원봉사자의 보호(안 제17조)
 - 제17조(자원봉사자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20조)

- 제20조(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자원봉사자 등이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소관 분야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안 제21조)

- 제21조(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센터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하여 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훈련 지원(안 제22조)

- 제22조(교육훈련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 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자원봉사 전문교육과정의 인증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자원봉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구개발 지원(안 제23조)
 - 제23조(연구개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제도의 발전과 자원봉사문화의 확산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자원봉사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안 제25조)
 - 제25조(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자원봉사센터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자원봉사협의회(안 제26조)
 - 제26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① 자원봉사단체는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를 진흥·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⑤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앙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19조)
 -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는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자원봉사센터를 둘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역자원봉사센터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자원봉사센터의 구체적인 업무 및 기능과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 28조)

- 제28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자원봉사센터 소속 직원의 복무, 상근인원 최소기준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및 위탁(안 제 29조)

- 제29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핵심 내용

○ 현행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은 전체 1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기본법 개정안이 현행 20조에서 30조로 전면 개정됨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역시 늘어날 전망

- 대통령령으로 직접 위임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에 따른 시행령 조문은 최소 19개임

○ 주요 변경 내용 및 대상을 기본법 개정 방향의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① 자원봉사 거버넌스·인프라 강화
 - 자원봉사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무위원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조직 및 운영
 - 국가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실태조사
 -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전담기구 지정
 -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
- ② 지역사회주도 풀뿌리 자원봉사강화
 - 자원봉사센터: 중앙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중앙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 국·공유재산 사용: 자원봉사센터가 정하는 사업 유형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국·공유재산 사용 명시
 - 기부금품 접수 특례(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생략) 등
- ③ 기타
 -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 자원봉사자의 보호
 - 포상
 - 위임 및 위탁

<표 2-3> 시행령 조문 비교표

기본법개정안	시행령(현행)	시행령 개정안
(제8조)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제2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구성	국가자원봉사진흥위원회 구성
	(제3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운영	국가자원봉사진흥위원회 운영
	(제4조)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 구성	국가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 구성
(제10조~14조) 국가기본계획	(제5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국가기본계획 및 기본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신설>	실태조사 (실태조사 실시, 결과공표의 방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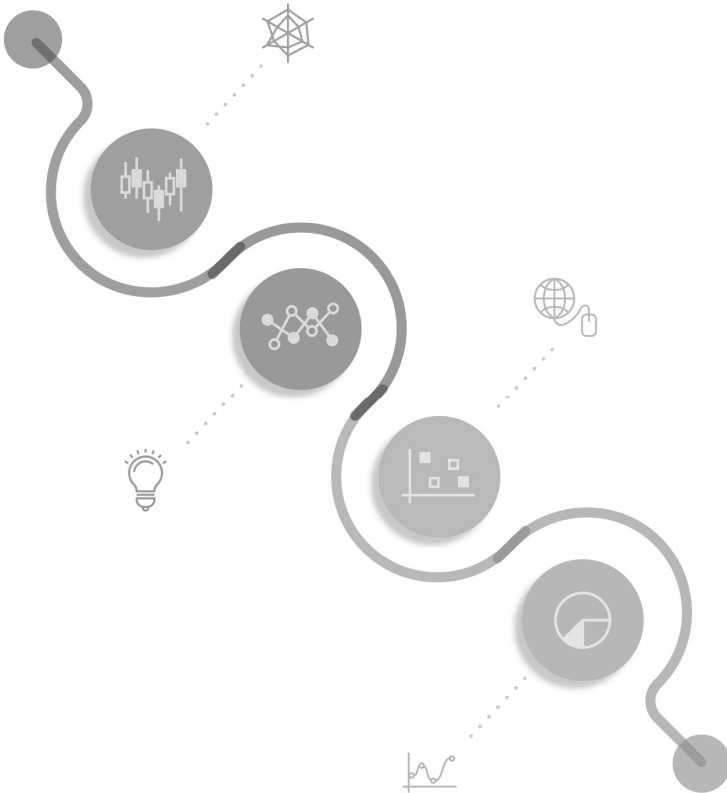
기본법개정안	시행령(현행)	시행령 개정안
(제 15·16조) 자원봉사 촉진	(제8조)포상	포상
	(제9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자원봉사자의 날: 12월 5일, 주간: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
(제17조) 자원봉사자의 보호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제20·21조) 자원봉사 통합정보시스템	<신설>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신설>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 (전담기구 지정 및 운영)
(제22조) 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	교육훈련 지원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기관 요건)
(제23조) 연구개발	<신설>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운영 (연구개발, 실태조사 수행 위한 기관의 요건)
(제24조) 국유·공유재산 사용	(제12조)국·공유재산 사용	국·공유재산 사용 (자원봉사센터가 정하는 사업 유형,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대여·사용근거 마련)
(제25조) 기부금품 접수 특례	<신설>	기부금품 접수 특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생략)
(제26조)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제13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회원 등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조직 및 운영
(제28조) 자원봉사센터	(제14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중앙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제29조) 위임 및 위탁	<신설>	행정자치부 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및 업무 위탁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장 주요 내용별 하위법령 정비방안

제1절 자원봉사 거버넌스·인프라 강화

제2절 지역사회주도 풀뿌리 자원봉사 강화

제3절 기타



제 3 장

주요 내용별 하위법령 정비방안

제1절 자원봉사 거버넌스 · 인프라 강화

1. 목적

가. 주요 내용

- 기본법 개정안의 명칭 변경에 따라 시행령의 주요 목적조항 역시 개정 필요

나. 모법 규정

-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사회문제 해결의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고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공공복리 증진과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참고입법례

 법제처 입안심사 기준

-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의 목적 규정에서 상위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표현을 할 때 「같은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에 필요한」, 「그 시행에 필요한」 등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으나, 표현을 통일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으로 하기로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 시행령 정비방안

- 기본법 명칭의 변경에 따라 자원봉사기본법으로 일부 조문 수정

<표 3-1> 목적 조문 비교표

시행령(현행)	시행령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봉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자원봉사진흥위원회

가. 주요내용

-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활동 및 위상 강화 필요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장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자문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의 사무국이 없이 1년에 한두 번 자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그 실효성의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
 - 그동안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활동은 극히 미약하였으며, 그 역할과 기능이 너무 피상적이었다는 평가(행정자치부, 2015)
- 중앙차원에서의 심의의결 안전에 대한 부처별 기관별 사업에 대한 사전 조정과 조율, 의결 이후 이행과 모니터링 및 이행결과에 대한 감독 등 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하고 지원할 집행기구를 명시화 할 필요(행정안전부, 2017)
 -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총괄적 자원봉사 진흥 및 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 등을 위해 광역단위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
- 광역 진흥위원회 주요기능으로 자원봉사진흥기본계획 수립과 이행 평가 내용 명시하고, 국가 및 광역중심의 진흥 계획 수립과 이행 촉진을 주요 기능화 할 필요
 - 또한 중앙 및 지자체 진흥위원회 정기화로 실질적 민관 거버넌스 체계 공고화 필요

나. 모법 규정

- 제8조(국가자원봉사진흥위원회) ①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 ② 국가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조정
 2. 자원봉사진흥 국가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개선 권고
 4.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원봉사진흥에 필요한 사항
 -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 1인이 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 ⑤ 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국가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국가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참고입법례

□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 제5조(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농촌진흥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장,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의 장

3.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학교·연구소·국제기구에서 학교장·교수·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과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 제5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4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말한다.

- ② 정책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의4제3항제2호에 따라 7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책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⑤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이 된다.
-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조의4제4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정책위원회로부터 검토 지시를 받은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책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아니한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실무위원회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④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책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다문화가족정책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⑤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견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5조(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진흥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여성가족부차관·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원장 등 당연직 위원과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② 진흥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職)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진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진흥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진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진흥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위원회에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및 운영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 제2조의4(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교육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한다.
 - ④ 지역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4제2항·제5항·제6항 및 제2조의5부터 제2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역협의회"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 제5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2.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3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5조제5항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교육부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외교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 ② 법 제25조제6항의 위촉위원은 노동·환경·외국인투자·물류·도시정책 등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 ③ 제2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촉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
 2. 기획재정부차관
 3.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4.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

는 사람 1명

5.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회계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6.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7.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자격으로 요구되는 전문성에 관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및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배석하여야 하며,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회의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간사위원의 사무처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간사위원이 지명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한다.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의안의 사전 검토·조정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외교통상부 및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이 된다.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실무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④ 제9조 및 제10조는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대책에 관하여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2. 재난 발생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재난의 수습에 관하여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실무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이 충분한 사람
 -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는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 ⑥ 실무회의는 실무위원장과 실무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⑦ 실무회의는 제6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라. 시행령 정비방안

- 당연직위원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 등을 추가
- 제1항 제2호에서 행안부장관도 민간위원 추천권자에 포함

<표 3-2> 자원봉사진흥위원회 구성 시행령 조문 비교표

시행령(현행)	시행령 개정안
<p>제2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 ①「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p>1. 당연직 위원 :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p> <p>2. 민간위원 :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p> <p>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 1인이 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p> <p>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되 행정안전부장관, 민간부위원장 순으로 한다.</p>	<p>제2조(국가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 ①「<u>자원봉사 기본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자원봉사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p>1. 당연직 위원 :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u>외교부장관</u>·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u>문화체육관광부장관</u>·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p> <p>2. 민간위원 : 자원봉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u>제18조</u>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교육부장관·<u>행정안전부장관</u>·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p> <p>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 1인이 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p> <p>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되 행정안전부장관, 민간부위원장 순으로 한다.</p>

<표 3-3>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운영 시행령 조문 비교표

시행령(현행)	시행령 개정안
<p>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부의된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p> <p>⑤위원회는 자원봉사진흥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p> <p>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은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⑦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부의된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u>자원봉사</u>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p> <p>⑤위원회는 자원봉사진흥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p> <p>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은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⑦<u>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u></p> <p>⑧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p>

시행령(현행)	시행령 개정안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표 3-4> 국가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의 구성 시행령 조문 비교표

시행령(현행)	시행령 개정안
<p>제4조(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p> <p>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p>1. 당연직 실무위원 :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경찰청 및 소방청의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p> <p>2. 민간실무위원 :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p> <p>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민간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 1인이 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 중 민간실무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민간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⑤부의된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p>	<p>제4조(국가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4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p>1. 당연직 실무위원 :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경찰청 및 소방청의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p> <p>2. 민간실무위원 :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p> <p>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민간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 1인이 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 중 민간실무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p>

시행령(현행)	시행령 개정안
<p>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 관련 국장은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⑥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p> <p>⑦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④민간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⑤부의된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 관련 국장은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⑥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p> <p>⑦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3. 국가기본계획

가. 주요 내용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는 매년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며,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기본법 변경의 주요 취지는 국가-지역 기본계획 및 연단위 시행계획 수립 시행체계 확대·개편
 - 현행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가-지역 기본계획 및 연단위 시행계획 수립·시행체계를 확대·개편하면서, 기본계획 입안 시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연단위 시행계획의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
-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도 5년마다 자원봉사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적으로 수립

- 연단위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
-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 주기로 수립하며,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국가기본계획의 내용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추진일정,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 지원정책, 재원조달방법 등을 포함
-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자원봉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나. 모법 규정

- 제10조(자원봉사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기본 방향
 2.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추진 일정
 3.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 지원정책
 4. 자원봉사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자원봉사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자원봉사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 참고입법례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 제2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식생활 교육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3조(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평생교육업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안을 법 제10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 제2조의2(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

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2. 해당 연도의 주요사업별 추진 방침
3. 해당 연도의 주요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4. 그 밖에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종합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제2조의3(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해의 12월 31일까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지역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내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도지사는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별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 제2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제1항 각 호의 사항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역환경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감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 제3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

른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사회보장 전달체계 관련 사항 등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 제2조(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법무부장관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법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시행령안 정비방안

○ 의원발의안에서는 자원봉사진흥국가기본계획이라고 하였지만 행안부 수정 의견에서는 국가라는 용어 삭제 의견이 있어 국가 용어 삭제를 제안함

○ 또한 제2항에서 '관계'를 삭제

<표 3-5> 국가기본계획 관련 시행령 조문 비교표

시행령(현행)	시행령 개정안
<p>제5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p> <p>②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5조(자원봉사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p> <p>②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4. 시행계획

가. 주요 내용

- 기본법 변경의 주요 취지는 국가-지역 기본계획 및 연단위 시행계획 수립 시행체계 확대·개편
 - 현행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가-지역 기본계획 및 연단위 시행계획 수립·시행체계를 확대·개편하면서, 기본계획 입안 시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연단위 시행계획의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
- 연단위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
-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자원봉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나. 모법 규정

- 제12조(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결과의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계획 또는 기본계획에 따라 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무총리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의 결과를 국가자원봉사위원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 참고입법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

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수립된 시행계획의 통보)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이하 "시행계획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여성가족부 소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여성가족부 소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연

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의 내용 중 외국인 정책 관련 사항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여성가족부 소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법 제3조의4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라. 시행령 정비방안

○ 제1항

-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종전에는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도 국가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지만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신들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는 최소한으로 축소

○ 제4항

- 법 개정안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이행결과도 평가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를 위하여 이행결과를 제출받을 수 있게 하되, 시·도와 시·

- 군·자치구는 각각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고, 이행결과를 평가하려면 전년도 시행계획이 있어야 하므로 이행결과 제출 시 시행계획도 함께 제출하도록 함
- 이는 이행결과 평가를 위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여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낼 수 있도록 표현을 조정
- 제5항 : 이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격상됨에 따라 현행 시행령 제4항의 전단은 삭제하도록 하되, 전문연구기관 자문 등의 근거는 존치함
-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로 제안

<표 3-6> 연도별 시행계획 관련 시행령 조문 비교표

시행령(현행)	시행령 개정안
<p>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말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연도의 소관 자원봉사활동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시사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소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이를 3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p> <p>③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시사는 매년 1월말까지 행정안전부</p>	<p>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 이행결과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이를 3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④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p>

시행령(현행)	시행령 개정안
<p>장관에게 각각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④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결과를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행 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p>	<p>라 한다)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에게 전년도 시행계획과 그 시행계획의 이행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행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p>

5.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가. 주요 내용

- 자원봉사활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관련 공공 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이를 근거하는 법률조항의 필요

나. 참고입법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제2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지역발전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 제18조의5(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제공 및 시험감독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요청 등) ① 무역위원회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입배제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해당 물품등이 반입배제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시행령 정비방안

- 특별히 개정될 사항은 없으며, 현행 시행령 그대로 유지

<표 3-7> 관계기관 등의 협조 관련 시행령 조문 비교표

시행령(현행)	시행령 개정안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자원봉사단체 그 밖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자원봉사단체 그 밖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 실태조사

가. 주요 내용

-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실태조사는 시민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의식과 참여율, 자원봉사 쟁점사항에 대한 일반 시민 의견 수렴 및 반응을 통하여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의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고자 1999년부터 2014년까지 매 3년 마다 진행(행정자치부, 2015)
 - 전국 광역 시도 및 읍·면·동(제주도 제외)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일반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원의 가구방문에 의한 1:1 개별면접조사로 실시
- 이러한 실태조사는 자원봉사 기관단체의 기초자료와 국가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실태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례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
- 이에 제3차 국가기본계획에서는 자원봉사 실태조사 항목을 표준화하고, 전국 및 지역단위 자원봉사 실태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하고자 계획 중(행정안전부, 2017)
- 자원봉사 실태조사 항목 표준화
 - 한국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미국 자원봉사자보호법(Volunteer Protection Act), 영 연방 자원봉사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zation), 유럽연합(EU), 캐나다봉사단(Volunteer Canada), 유엔봉사단(UNV),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국내외 자원봉사 개념의 정의, 원칙, 그리고 변천 등을 조사하고, 국내외 자원봉사 관련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자원봉사의 개념 추적
 - 특히, 자원봉사의 개념 중 자발성의 변천, 대가성의 변천, 자원봉사와 시민서비스(civic service)의 개념 차이와 유사성 등을 집중 조사
 - 통계청의 사회조사 및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 실태조사 등의 설문 문항, 선택지, 기준, 척도 등을 파악
- 전국 및 지역단위 자원봉사 실태조사 지원
 - 실태조사 항목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 실태조사를 행정안전부

- 차원에서 실시하고, 광역단위에서 실태조사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이 필요
-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 간 사업 전반을 공유하고 진행하고, 광역단위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필요가 있음

나. 모범 규정

- 제13조(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원봉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참고입법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실태조사)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사업 및 공공디자인 용역 발주 현황
 2. 공공디자인 종사자 및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수요·공급 실태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공공디자인 교육 현황
 4.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 현황
 5. 공공디자인 관련 회사·기관·학교 및 단체 현황
 6. 국가기관등의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 및 예산 현황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공공디자인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의3(중복·유사 서비스 실태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수시로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이하 "공공기관 서비스"라 한다)
 2. 공공기관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민간 서비스의 현황
 3. 공공기관 서비스의 축소·폐지 등에 대한 개인, 기업 또는 단체 등의 개선 요청 여부
 4. 공공기관 서비스의 이용률, 서비스 개선의 정도 등 관리 현황
 5. 공공기관 서비스의 축소·폐지 등에 대한 해당 공공기관의 자체 개선계획 수립 여부
 6. 공공기관의 추가 서비스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7.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이행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중복·유사 서비스의 예방 또는 시정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장

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해당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구강보건법 시행령

○ 제4조(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①법 제9조에 따른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구강건강상태조사 및 구강건강의식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상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치아건강상태
2. 치주조직건강상태
3. 의치보철상태
4. 그 밖에 치아반점도 등 구강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의식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2. 구강보건에 대한 태도
3. 구강보건에 대한 행동
4. 그 밖에 구강보건의식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상태조사 및 구강건강의식조사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구강건강상태조사는 직접 구강검사를 통하여 실시하고, 구강건강의식조사는 면접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시한다.

⑤ 구강건강실태조사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제45조(실태조사) ① 법 제4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기관등의 국가정보화 추진 실태
 2. 국가기관등의 민간 분야 정보화 지원 실태
 3.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제품의 활용 및 이용규범에 대한 정보문화 실태
 4.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접근·보유·이용 등에 관한 정보격차 실태
 5. 인터넷 및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의 해당 기기에 대한 중독 실태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실태 및 그 추진 성과
 7. 국가기관등의 지식정보자원 보유량 및 디지털화 현황
 8. 국가기관등의 지식정보자원 및 중요지식정보자원의 관리 실태
 9. 그 밖에 국가정보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국가기관등, 국민, 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제2조(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결혼이민자등과 그 한국인 배우자 및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문화가족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연령, 학력, 취업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지출, 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 가족행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4. 의식주, 소비, 여가, 정보 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5. 가족갈등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6.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교육·상담 등 서비스 수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5조(실태조사)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에 관한 사항
 2.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인력 현황 및 수요·공급 실태에 관한 사항
 3.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용역 제공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제11조(통합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사업전환 실태조사
 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조사
- 제1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지역별·업종별·규모별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공장보유 여부, 자재 구매, 설비투자, 재무구조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수탁거래·위탁거래, 고용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자,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통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방식 및 조사주기 등에 관한 사항
 2. 조사대상의 공동 활용, 조사항목의 단순화, 조사시기의 단일화, 조사결과 의 대표성·신뢰성 확보, 조사결과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
 3. 조사기획, 표본설계,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4. 조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의 조사목적별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경지의 양분(養分)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가. 가축의 종류별 사육 마릿수

나. 가축분뇨의 발생량

다. 퇴비·액비 등으로의 자원화, 정화처리 등 가축분뇨의 처리 유형별 현황

라. 작목의 종류별 재배 농경지의 면적

마. 작목별 비료의 수급 현황

바. 작목별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사. 그 밖에 농경지의 양분 현황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생활환경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토양 등의 오염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가.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라. 「지하수법」 제2조제1호의 지하수의 오염물질

마. 그 밖에 생활환경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토양 등의 오염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조사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경지

2.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3.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으로 인하여 수질·토양·지하수 등의 환경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상류지역 또는 「하

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보(洑) 상류지역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저수지 상류 지역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가축분뇨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시료채취 및 시료분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라. 시행령 정비방안

- 실태조사 항목은 관련 문헌의 항목 참조(행정자치부, 2014,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공표는 특정인의 권익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공표효과를 감안하여 인터넷에 의한 방법만 규정

<표 3-8> 실태조사 시행령 조문 비교표

시행령(현행)	시행령 개정안
<신설>	<p>제8조(실태조사) ①법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 자원봉사활동 현황 2. 국내 자원봉사활동 관련 국민 인식 3. 국내외 자원봉사 관련 법·제도 현황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p>

시행령(현행)	시행령 개정안
	<p>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1주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p>

7.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

가. 주요내용

- 자원봉사자와 수요처 및 일감에 대한 정보제공, 자원봉사 관련 실적 산출 등을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자원봉사 포털은 1365, VMS, 나이스(NEIS), DOVOL, 문화품앗-e, 농촌재능나눔 스마일재능뱅크, 팀즈 등이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별 시스템 기능의 고도화와 포털 간 자원봉사실적 연계 등이 추진
- 1365자원봉사포털의 운영 현황
 -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 관리와 자원봉사 인력 수요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의 필요성은 제1차·2차 국가기본계획에서 강조되었으며,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1365자원봉사포털(<https://www.1365.go.kr/vols/main.do>)”을 구축하여 운영 중
 - 1365자원봉사포털은 봉사참여자와 수혜자, 그리고 외부시스템과 연계하여 봉사활동의 실적 및 자료를 연계하는 나눔포털을 표방하고 있음
 -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자원봉사참여자와 자원봉사수요처를 연결하고, 자원봉사활동 실적 정보를 수집·가공할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및 교육부(NEIS), 보건복지부(VMS), 여성가족부(DOVOL)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자원봉사센터)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주요 참여 실적 및 자료를 연계

<그림 3-1> 1365 자원봉사포털 홈페이지



- 그러나 다양한 시스템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으며, 개별 시스템별 계정이 상이한 점 등 이용자인 국민이나 자원봉사자 편의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행정안전부, 2017)
 - 여러 포털에 중복 가입된 봉사활동 실적은 대표적 통계로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많은 실정이며, 특히 1365 포털의 자원봉사실적은 지자체 합동평가의 지표로 활용되어 관계된 자원봉사센터들이 양적 실적을 높이기 위한 갖가지 불합리한 방안을 동원하는 등 부작용이 상당
- 현재 자원봉사포털 시스템의 경우 시간인증 기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의 비효율 문제가 대두
 - 시간 인증 프레임은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자원봉사활동시간 인증 여부에 따라 참여를 결정하는 등 자유로운 봉사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부작용 노정
 - 무엇보다 획일적 시간으로 기준화된 자원봉사 인정 기준은 자원봉사의 가치와 의미 보다 시간에 얽매이게 한다는 문제점 야기

- 자원봉사 포털의 방대한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원봉사 참여 촉진을 위해 활용하는데 미흡
- 자원봉사진흥 제3차 국가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용자 중심의 자원봉사포털 서비스 고도화 및 시간인증제 정비 및 대안적 참여인증시스템 구축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행정안전부, 2017)
- 이용자 중심의 자원봉사포털 서비스 고도화
 - 자원봉사 포털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활동을 안내하거나 촉진하는 기능과 저변이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용자 중심의 포털 고도화를 추진
 - 이용자 중심 포털 고도화의 정책 방향은 (1) 종합적 안내 기능 강화, (2) 쉬운 로그인과 개인의 참여 관리, (3) 빅데이터 기반 자원봉사 관련 서비스 개발을 포함
- 시간인증제 정비 및 대안적 참여인증 시스템 구축
 - 자발성과 시민성의 자원봉사 가치를 시간인증에 경도된 시스템을 통해 훼손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참여인증제도를 운영하고자 계획
 - 시간인증제도의 참여인증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자원봉사 포상제도가 함께 변화되어야 하는데 특히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를 추천할 때 운영하는 시간기준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나. 모범 규정

- 제20조(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자원봉사자 등이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소관 분야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참고입법례

□ 식품안전기본법

○ 제24조의2(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행정기관에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 및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 제17조의2(표준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 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다.

1. 영업소의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2. 제조·가공 식품등의 품목, 유형 및 원료의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3. 농·축·수산물의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품안전기본법

-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
 2. 제10조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11조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에 관한 정보
 - 2의2. 제13조에 따라 사업자가 행한 수거등의 조치에 관한 정보 및 제13조의2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한 정보
 3.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 제18조(제품안전정보망의 공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제품안전 관련정보"라 한다)를 공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제품안전정보망과의 연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품안전 관련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품안전 관련정보의 범위 및 이용방식 등을 정할 수 있다.

□ 사회보장기본법

-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총괄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 제19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사회보장수급자 및 사회보장급여 현황관리

2. 사회보장 관련통계의 생성 및 관리
 3.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수급자격의 조사업무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 환수(還收) 등 사후관리 업무의 전자화 및 처리지원
 4. 사회보장수급자격의 취득·상실·정지·변경 등 변동관리
 5. 사회보장급여 및 보조금의 부정·중복수급 모니터링
 6.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
-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수집·보유·이용·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보장수급자 수, 선정기준, 보장내용, 예산,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보장수급자 현황에 관한 자료
 2.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수급자격의 조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신청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다만,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근로능력, 소득·재산 상태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민등록전산정보 등 인적사항 및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사항
 - 나. 토지·건물·선박·차량·주택분양권,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퇴직금·보훈급여·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근로장려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 다. 출입국·병무·교정·사업자등록증·고용정보·보건의료정보 등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자료
 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및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신청, 제공 및 환수 등의 업무처리 내역에 관한 자료
 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보조금 수급이력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관리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를 포함한다)은 법 제37조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건강관리,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정보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 범위,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⑥ 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기구로 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25조(대국민 포털 구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에게 사회보장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검색, 조회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구축·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필요한 국민이 사회보장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이 대국민 포털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도 제5

조에 따른 신청으로 보고, 제6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구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5조(대국민 포털의 구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과 품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 및 분석을 할 수 있다.

1. 사회보장급여의 명칭, 법령, 예산, 지원 대상 및 규모, 수급자격의 조사 및 선정기준, 보장 단위,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급여의 현황에 관한 조사 및 분석
2. 대국민 포털 이용자의 방문기록 및 검색어 분석 등 서비스 내용 및 품질에 관한 조사 및 분석

②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대국민 포털을 구축·관리할 수 있도록 대국민 포털을 통하여 정보가 제공되는 사회보장급여가 신설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등 사회보장급여 관련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통지받은 변경 내용을 대국민 포털의 자료 또는 정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정보가 대국민 포털을 통해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을 통한 사회보장 정보의 활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을 통한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국민 포털을 통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대국민 포털 이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라. 시행령 정비방안

- 현재 각 부처에서 운영중인 시스템의 문제점 보완필요사항을 고려하여 이용자 중심의 포털 운영방침을 명시

<표 3-9>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 시행령 조문 비교표

시행령(현행)	시행령 개정안
<신규>	<p>제12조(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원봉사자와 수요처 및 일감에 대한 정보제공 2. 자원봉사 관련 통계의 취합 3. 자원봉사자의 활동내용에 대한 인증 4. 그 밖의 자원봉사 관련 정보

8.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

가. 주요내용

-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이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전담기구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나. 모범 규정

- 제21조(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센터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하여 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참고입법례

□ 사회복지사업법

- 제6조의3(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 설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법인으로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제1조의2(전담기구의 설립 및 운영 등) 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기능개선·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관리·가공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공
 3. 법 제3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대한 전자적 지원
 4. 법 제33조의7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의 이용·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자화 지원
 6.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정보 및 통계정보의 생산·분석 및 제공
 7. 사회복지 관련 대국민 인터넷 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③ 전담기구의 장은 제2항의 업무에 관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사업 실적과 예산·결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 다음 사업연도 2월 말까지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담기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제10조의4(통합관리시스템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법 제20조의2제6항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인력: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 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제16조제1항제2호의 법인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중소기업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정보시스템의 개발, 관리 및 운영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설비: 정보시스템의 운영, 통계 분석 및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춘 것
- ②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관리
 2. 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된 자료 또는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및 통계자료의 생산 및 분석
 4. 그 밖에 통합관리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의 지정 및 감독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 시행령 정비방안

- 본 시행령 조문에서는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소관업무와 감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

<표 3-10>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 시행령 조문 비교표

시행령(현행)	시행령 개정안
<p><신설></p>	<p>제13조(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의 지정 등) ①법 제21조에 따른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기능 개선·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집된 정보의 관리·가공 및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공 3. 자원봉사센터 등의 통합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p>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전담기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p>

9.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가. 주요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훈련·연구개발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함으로써 역량 강화 및 책임성·공신력 제고 효과 창출 필요

나. 모범규정

- 제22조(교육훈련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 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자원봉사 전문교육과정의 인증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자원봉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참고입법례

식생활교육지원법

- 제25조(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이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기관·단체를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 제14조(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기관(이하 "식생활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3. 교육 관련 인력 현황
 4.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기관을 지정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의5(교육기관의 지정)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중 별표 4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 1. 해양경찰, 소방 등 수상구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2. 학교 및 연구기관
 - 3.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허가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수상구조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 ②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교육기관 운영계획서 1부
 - 2.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시설의 사용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교육기관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

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2조의6(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2조의7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제12조의7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 수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기 전에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개선·보완할 것을 1회에 한정하여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선·보완 명령에는 해당 교육기관이 개선·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교육기관은 제3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교육기관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10조(전문인력 양성의 내용)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 온라인 교육의 실시
 2. 공간정보기술자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
-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공간정보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2.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진흥원
 3.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
 4. 한국국토정보공사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6. 삭제
 7. 그 밖에 공간정보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전문 교수요원 인력의 적정성
 2.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3. 지원금 활용계획의 적절성
 4. 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교육훈련 실시, 예산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10조(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련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안전교육 과정 세부 운영계획서
 3. 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 세부 현황
 4. 교육과정 편성내용 및 교재 세부 현황
 5. 교육과정별 정원 및 운영일정
 6. 교육 시설·장비 등 확보 세부현황
 7. 교육과정 운영 예산내역 및 교육생 부담 경비내역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보유할 것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3. 안전체험교육이 가능하도록 시설 또는 학습교구 등을 확보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5조의2(임업분야 교육 지원) ① 산림청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업 및 산림분야 계열학교에 대하여 임업분야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임업분야 인력수급 상황과 직업역량 개발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갖출 것
 2. 임업분야 인력양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설비를 갖출 것
 3. 그 밖에 임업분야 교육역량 강화 계획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업분야 교육 지원을 하는 경우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실습 기자재 구입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지원의 신청, 임업분야 교육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 시행령 정비방안

-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
- 다음의 현행 규정은 삭제
 -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관련 교육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 현재처럼 부령을 제정하지 않을 것을 전제하여 세부기준과 서식은 고시로 정하도록 함(시행령에서 서식을 정할 경우 사소한 수정도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등의 불편이 따름)
- 또한 향후 기본법 개정안과 관련된 논의에서 전문인력 양성 뿐만 아니라 일반 자원봉사자의 교육도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안이 제기됨에 따라, 시행령안도 자원봉사자의 교육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마련

<표 3-11>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시행령 조문 비교표

시행령(현행)	시행령 개정안
제11조(교육훈련)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관련 교육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기관은 전문인력양성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1. 교육과정, 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시행령(현행)	시행령 개정안
	<p>②제1항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3. 교육 관련 인력 현황 4.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p>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지정신청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p> <p>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⑤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p> <p>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10.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가. 주요내용

- 자원봉사와 관련된 전문적 연구활동을 증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자원봉사 관련 정책에 반영하거나 자원봉사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 및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성 증대
- 이에 제3차 국가기본계획에서는 자원봉사 정책연구 확대와 기관/단체의 학술활동 지원을 주요 과제로 도출하고 있음
- 자원봉사 정책연구 확대
 - 제4차 산업혁명 등 자원봉사 저변의 변화, 시대적 요구, 정책적 성과여부에 따른 신규 과제 발굴 등을 위한 정책연구가 보다 확대될 필요
 - 자원봉사 관련 정책의 중요도 및 난이도, 토대구축의 필요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과제의 성격을 시기별로 구분 단기-중기-장기로 진행할 필요 존재
- 기관/단체의 자원봉사 학술활동 지원
 - 학술활동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 관련 학술세미나,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하여 자원봉사 관련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나. 모법규정

- 제23조(연구개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제도의 발전과 자원봉사문화의 확산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자원봉사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참고입법례

□ 중소기업기본법

- 제2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③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제16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인일 것
 2. 법인의 주된 설립 목적이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으로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3. 중소기업 연구 전문인력(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중소기업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5명 이상 보유할 것
 - ②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 간 중소기업 관련 연구 실적
 2. 중소기업 전문연구인력 보유 현황
 3. 그 밖에 중소기업 정책 연구에 필요한 사항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④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 방위사업법 시행령

○ 제46조(전문연구기관의 위촉) ①방위사업청장은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그 연구시설 및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위촉한다. 다만, 군사기밀이 아닌 연구개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제4항의 규정은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연구시설 및 그 주요부속시설의 명세와 그 능력설명서
3.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4. 기술능력설명서

③방위사업청장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관 감독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전문연구기관을 위촉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위촉서를 그 전문연구기관에 교부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위촉한 때에는 소관 감독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전문연구기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 관련 연구소
5.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등록된 자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라. 시행령 정비방안

- 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는 전문교육기관 및 전문연구기관과는 성격이 많이 다르므로 전담기구에 관한 조문은 원안을 유지하고 전문교육기관과 전문연구기관은 요건 등에 차이는 있겠으나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가급적 통일된 규정방식을 채택
-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의 구체적 인력기준 등은 법령에서 한정적으로 규정하되 그보다 필요시 검토 후 마련할 수 있도록 유연성 확보

<표 3-12>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시행령 조문 비교표

시행령(현행)	시행령 개정안
<신설>	<p>제1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자원봉사에 관한 연구역량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p> <p>②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3년 간 자원봉사 관련 연구 실적 2. 자원봉사 전문연구인력 보유 현황 3. 그 밖에 자원봉사 정책 연구에 필요한 사항

시행령(현행)	시행령 개정안
	<p>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지정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p> <p>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⑤전문연구기관의 지정 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p> <p>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11.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가. 주요 내용

-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자원봉사 민간대표기구이자 법정단체로서 125개 회원단체와 250여개 협력단체로 구성
 -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당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었으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법률 제7669호, 2005. 8. 4.)이 제정되면서 동 법률 부칙 제2항에서 동 협의회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자원봉사협의회로 보도록 함으로써 법정단체로 규정됨
-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주요 역할
 -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과 모든 시민의 참여 확대, 시민사회 역량강화를 목표
 - 5대 정책영역(자원봉사문화와 참여,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자원봉사 관리

와 개발,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자원봉사 글로벌 협력)과 이에 기반한 4대 사업영역(자원봉사 캠페인, 자원봉사전국행사, 교육·연구·정책, 글로벌 협력)을 주도

<그림 3-2> 한국자원봉사협회의의 5대 정책영역 및 4대 사업영역



출처: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홈페이지(http://www.vkorea.or.kr/contents/company2.html?sm=1_1)

- 법정단체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지위를 감안하여 자원봉사와 관련한 교육 사업을 기능으로 추가하고, 동 협의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지원의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기본법 개정의 배경

나. 모범규정

- 제26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① 자원봉사단체는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를 진흥·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단체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2.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3. 자원봉사와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조사·연구
 4. 자원봉사와 관련된 정책의 건의

5. 자원봉사와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6. 자원봉사 지도자·관리자의 리더십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자원봉사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②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⑤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참고입법례

산림보호법 시행령

- 제21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중앙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
- ② 중앙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2. 제2조제3호의 기관의 영관급 공무원
 3. 제2조제4호의 기관의 부장급 직원
- ③ 중앙산불방지협의회는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산림청의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중앙산불방지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중앙산불방지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지역산불방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

⑦ 지역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할 지역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

2. 관할 지역 산불유관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⑧ 지역산불방지협의회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단체장이 되고, 시·도 또는 시·군·구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⑨ 지역산불방지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⑩ 지역산불방지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국방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산업통상자원부차관
 5. 보건복지부차관
 6. 국토교통부차관
 7. 소방청장
 8. 해양경찰청장
 9.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10.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한국국제협력단"이라 한다) 이사장
 11. 그 밖에 협의회의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12. 위원장이 지정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인·단체의 장
 1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사항 중 긴급하거나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제1항제13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은 협의회 출석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⑦ 협의회 업무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시행령 정비방안

○ 시행령 현행 규정 유지하되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번호만 수정

<표 3-13>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시행령 조문 비교표

시행령(현행)	시행령 개정안
<p>제13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회원 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원봉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2.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 <p>②협의회의 임원으로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5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p> <p>③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p>	<p>제18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회원 등)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원봉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2.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 <p>②협의회의 임원으로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5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p> <p>③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p>

시행령(현행)	시행령 개정안
<p>④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⑤임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및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p> <p>⑥협의회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④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⑤임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및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p> <p>⑥협의회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제2절 지역사회주도 풀뿌리 자원봉사 강화

1. 자원봉사센터

가.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지침」을 마련하고, 1996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기 시작
- 현재 총 245개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설치된 지역 자원봉사센터 중 123개가 지방자치단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음 (행정안전부, 2017, 자원봉사센터 현황)
 - 지자체 직영은 2006년 151개, 전체 60.9%에서 점차 그 비중이 감소하여 2016년 기준으로는 전체 50.2%를 차지
 - 반면 법인형태는 2006년 14개소, 5.6%에서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하여 2016년 기준 전체 6개소, 27.8%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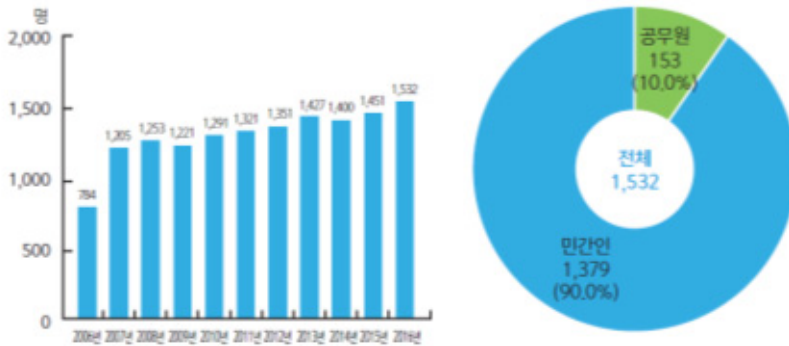
<그림 3-3> 연도별 자원봉사센터 운영형태



자료: 행정안전부, 2017, 「2017 자원봉사센터 현황」, p. 13

- 자원봉사센터 근무인력은 2016년 기준 전체 1,532명이며, 이중 공무원은 153명(10.0%), 민간인은 1,379(90%)로 구성
 - 연도별 근무인원을 살펴보면 2006년 784명에서 2016년 1532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중 공무원의 비중은 2006년 25.9%에서 점점 감소하여 2016년 10%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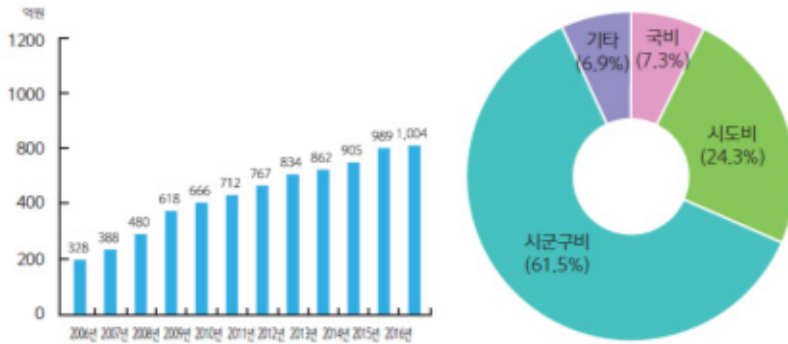
<그림 3-4> 자원봉사센터 연도별 근무인원 추이 및 2016년도 근무인원



자료: 행정안전부, 2017, 「2017 자원봉사센터 현황」, p. 15

- 예산현황의 경우 2016년 100,466 백만원의 예산 중 시군구비는 전체 61.5%, 시도비는 24.3%, 국비는 7.3%의 순으로 구분
 - 연도별 예산액은 2006년 32,805백만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6년 100,466 백만원으로 증대

<그림 3-5> 자원봉사센터 연도별 예산액 및 2016년 예산비율



자료: 행정안전부, 2017, 「2017 자원봉사센터 현황」, p. 31

- 지역사회 환경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과 역할 고도화 필요
- 그러나 기업, 사회적 경제, 주민 조직 및 풀뿌리 봉사단체를 비롯해 자원봉사에 참여 혹은 연계할 민간영역의 다양성은 확장되는 반면, 현재의 센터운영 체제로는 지역사회 환경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데 있어 상당한 한계점을 노출
- 확장된 민간영역 뿐 아니라 각종 전국단위의 자원봉사정책사업의 수행체계와 지자체 수준에서의 다양한 공적사업 지원체계로서 자원봉사센터의 수요는 매우 증가하는 반면 자원봉사센터 종사자의 수적 규모는 한정되어 있는 실정
 - 자원봉사센터 관리자의 전문성 수준에 있어서도 편차가 커지고 있으며, 관리자의 학습과 성장에 대한 욕구 또한 매우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교육체계나 학습모델은 매우 미흡
- 또한 센터 예산의 대부분은 지자체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상당한 애로점 존재

- 이에 제3차 국가기본계획에서는 자원봉사센터 민간중심성 및 전문성 강화, 자원봉사센터 재원의 다각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유관 섹터간 협력·지원기능 고도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행정안전부, 2017)
- 자원봉사센터 민간중심성 및 전문성 강화
 - 기본법 및 조례의 자원봉사센터 직영운영근거를 삭제하고 법인설립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직영 및 위탁 중심의 센터 운영체계에서 민간 전문운영형태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
 - 자원봉사 센터장 및 센터 직원의 전문자격 요건 강화와 인력 충원을 통한 민간전문 인력을 강화하는 등의 센터 운영지침 개정
- 자원봉사센터 재원의 다각화
 -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인적자원의 기여 뿐 아니라 물품과 기부금 등을 동시에 기탁 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가 현금 및 물품기부를 기탁 받을시 절차를 간소
 - 지자체의 재원 출연 및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법 인화에 따른 민간 재원 활용을 허용함으로써 센터 재원을 다각화
- 자원봉사센터의 유관 섹터간 협력·지원기능 고도화
 - 자원봉사센터의 주요기능으로 기업, 마을, 사회적 경제, 민간단체, 공공기관, 언론 등 조직 수준에서의 연대 협력의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확대
 - 지역풀뿌리단체 소모임 지원사업 추진

나. 모범규정

- 제28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③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자원봉사센터 소속 직원의 복무, 상근인원

최소기준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참고입법례

구체적 사업유형을 열거한 입법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

○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 제16조의2(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및 자격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며,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학력·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16조의3(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심사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제16조의2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제16조의2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문화예술교육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심사 신청과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 제17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에는 소장 1명을 둔다.
 - ② 소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 ③ 소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④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 위원회를 둔다.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소장은 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정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며, 센터의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자율적으로 관장한다.

라. 시행령 정비방안

- 자원봉사센터 직영근거 삭제는 기본법 개정사항이므로 시행령안에도 반영
- 제1항 제3호는 퇴직공직자의 업무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만, 민간 주도의 자원봉사체제의 확립에 저해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의견과, 자원봉사센터 장의 상근 근거조항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야 할 사항이므로, 현재 시행령 안에서는 현행 시행령을 유지하는 것으로 잠정함
- 또한 중앙자원봉사센터의 기능 및 역할도 명시하되, 지역단위 봉사센터가 기틀을 이룸을 고려하여 규정순서는 역순으로 규정(조 제목 등에서 “지역”이란 단어 삭제)
- 자원봉사센터 임직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을 명시하여 직원의 신분 을 보장

<표 3-14>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시행령 조문 비교표

시행령(현행)	시행령 개정안
<p>제14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p> <p>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p>②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p> <p>③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p>	<p>제19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p> <p>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 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p>②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p> <p>③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p>

<표 3-15>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관련 시행령 조문 비교표

시행령(현행)	시행령 개정안
<p>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p> <p>① 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p> <p>②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p> <p>④ 특별시·광역시·도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7.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p>⑤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군·자치구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p>제20조(지역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p> <p>① 지역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p> <p>② 지역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p> <p>④ <u>자원봉사센터의 임직원의 처우와 해고 등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u></p> <p>⑤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군·자치구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시·군·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p>⑥ 시·도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시행령(현행)	시행령 개정안
<p>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p> <p>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p> <p>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p> <p>6. 그 밖에 시·군·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p> <p>⑥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1. 시·도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p> <p>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p> <p>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p> <p>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p> <p>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p> <p>6.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p> <p>7. 그 밖에 시·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p> <p>⑦ 중앙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중앙 단위 자원봉사기관·단체 및 기업과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국제교류</p> <p>2. 지역 자원봉사센터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지원</p> <p>3. 자원봉사 확산을 위한 홍보</p> <p>4. 자원봉사 정책이슈 개발 및 연구</p> <p>5. 자원봉사 기록물 발간 및 보존</p> <p>6.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p> <p>7. 재난 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p> <p>8. 자원봉사현장의 인권과 안전 보장</p> <p>9. 자원봉사 포상업무 지원</p> <p>10. 그 밖에 자원봉사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p> <p>⑧지역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2. 국·공유재산 사용

가. 주요내용

- 자원봉사 기본법 개정안 제24조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 명시
 - 자원봉사 기본법 개정안 제2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이 정하는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공유재산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
- 그러나 시행령 ③항에서는 그 사용용도 및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
 - 현행 시행령 ③항에 따르면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경우 국·공유재산을 사무실 용도로 대여·사용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대여·사용하게 할 수 없다’로 규정
- 이에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무상대여 및 사용근거를 마련할 필요성 증대
 - 자원봉사센터가 정하는 사업 유형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국·공유재산 사용 명시 필요

나. 모범규정

- 제24조(국유·공유 재산의 사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관할 자원봉

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 참고입법례

법률구조법 시행령

- 제8조(국공유재산의 대부)법 제28조에 따른 국공유재산 대부(貸付)의 내용, 조건 및 기간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법률구조법인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3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공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②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 ③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기준 및 요건,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혁신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법 제46조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임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 제3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등)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당해 국·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의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7조(국·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등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5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는 조건 및 절차는 해당 국·공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단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 ② 국·공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단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된 국·공유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라. 시행령 정비방안

○ 특별히 개정할 사항은 없으며, 현재 시행령에서 조문번호만 일부 수정

<표 3-16> 국·공유재산 사용관련 시행령 조문 비교표

시행령(현행)	시행령 개정안
<p>제12조(국·공유재산의 사용)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행사에 관한 사업 2. 재난복구 및 구호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경우 국·공유재산을 사무실 용도로 대여·사용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대여·사용하게 할 수 없다. <p>②국·공유재산의 무상대여나 사용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6조(국·공유재산의 사용)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행사에 관한 사업 2. 재난복구 및 구호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경우 국·공유재산을 사무실 용도로 대여·사용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대여·사용하게 할 수 없다. <p>②국·공유재산의 무상대여나 사용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p>

3. 기부금품 접수 특례

가. 주요내용

- 자원봉사를 위한 자발적 물품의 기탁 등을 허용하여 재난·구호, 취약계층 지원 등의 기부와 자원봉사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필요
 - 현재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하여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며 자원봉사센터와 민간기업, 단체와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많은 실정

나. 모범규정

- 제25조(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자원봉사센터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참고입법례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6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조의2(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직위원회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시행령 정비방안

- 자발적 물품의 기탁 등을 허용하고, 기부와 자원봉사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행령 안 마련

<표 3-17> 기부금품 접수 특례관련 시행령 조문 비교표

시행령(현행)	시행령 개정안
<신설>	<p>제17조(기부금품 접수 특례)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센터(같은 항 후단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자원봉사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p>

시행령(현행)	시행령 개정안
	<p>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자원봉사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p> <p>④자원봉사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p> <p>⑤자원봉사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제3절 기타

1. 포상

가. 모범규정

○ 포상(안 제 15조)

- 제15조(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법인, 단체, 기관, (기업)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다. 참고입법례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 제10조(포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통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에 이바지한 자
2. 국제문화교류 관련 연구 또는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이바지한 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의 내용, 기준 및 방법·절차 등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 제22조(포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포상하려는 경우에는 포상 내용,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포상 기준 등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상 개인·단체 및 기업 등에 스포츠산업진흥과 관련한 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제52조(포상의 방법 및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시행령 정비방향

- 현재 시행령을 그대로 유지

<표 3-18> 포상 시행령 조문 비교표

시행령(현행)	시행령 개정안
제8조(포상)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대상자의 선정절차와 훈격은 「상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포상)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대상자의 선정절차와 훈격은 「상훈법」의 규정에 따른다.

2.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가. 모법규정

- 제16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며 자원봉사문화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을 설정한다.

나. 참고입법례

국민체육진흥법

- 제7조(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①국민의 체육 의식을 북돋우고 체육을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을 설정한다.
②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제5조(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체육 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이 속하는 달에는 학교에서는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와 그 밖의 체육행사를 하고, 직장에서는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육 주간에는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운동경기와 생활체육행사
 2. 씨름과 그네 등 민속체육행사
 3. 레크리에이션활동
 4. 체육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5.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행사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체육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통계법

- 제4조의2(통계의 날) 국가는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 장애인복지법

- 제14조(장애인의 날) ①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시행령 정비방향

- 자원봉사주년을 특정일로 지정하는 근거 마련

<표 3-19> 자원봉사자의 날 시행령 조문 비교표

시행령(현행)	시행령 개정안
<p>제9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p>제10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시행령(현행)	시행령 개정안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법 제16조에 따른 자원봉사주간은 자원봉사자의 날을 전후하여 1주일간으로 한다.

3.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

가. 모법규정

- 자원봉사자의 보호(안 제17조)
 - 제17조(자원봉사자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참고입법례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 제5조(보험가입 등) 생활체육종목단체, 체육동호인조직, 스포츠클럽, 생활체육회 및 그 지회·지부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생활체육대회: 해당 대회에 등록된 사람의 수와 대회참여 기간에 맞게 가입할 것
 2. 생활체육 강습: 해당 강습에 등록된 사람의 수와 강습 기간에 맞게 가입할 것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13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인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안전검사기관인 경우 :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 중 어느 하나의 업무를 최초로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
 -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별표 7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 제13조(보험가입) ① 법 제25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수련시설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 한다. 다만, 건축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청소년문화의 집은 제외한다.
 -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1.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원
 2. 부상의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자에게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

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다. 시행령 정비방향

- 현재 시행령을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조문번호만 수정

<표 3-20> 자원봉사자의 보호 시행령 조문 비교표

시행령(현행)	시행령 개정안
<p>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p> <p>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원봉사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보호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보호 3.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호 <p>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입원·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 	<p>제11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p> <p>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원봉사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보호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보호 3.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호 <p>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입원·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

시행령(현행)	시행령 개정안
<p>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p> <p>④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p>	<p>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p> <p>④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p>

4. 위임 및 위탁

가. 모법규정

- 제29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나. 참고입법례

경비업법 시행령

-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경찰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권한
 2. 법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청문의 권한
- ②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시험의 관리와 경비지도사의 교육에 관

한 업무를 경비업무에 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다. 시행령 정비방향

- 위임위탁조항은 현재로서는 위임위탁대상이 없으므로 미규정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가. 관련 법률 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삭제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나. 참고입법례

□ 골재채취법 시행령

○ 제4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을 위한 법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수리를 위한 법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② 협회는 법 제40조제1항 및 이 영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 시행령 정비방향

○ 현재 시행령을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조문번호만 수정

<표 3-2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행령 조문 비교표

시행령(현행)	시행령 개정안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공헌 인정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실적 정보를 수집(자원봉사활동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저장·보유·가공·제공(자원봉사활동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다른 중앙행정기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공헌 인정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실적 정보를 수집(자원봉사활동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저장·보유·가공·제공(자원봉사활동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다른 중앙행정기

시행령(현행)	시행령 개정안
<p>관의 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p>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p>관의 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p>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6. 부칙

가. 시행령 정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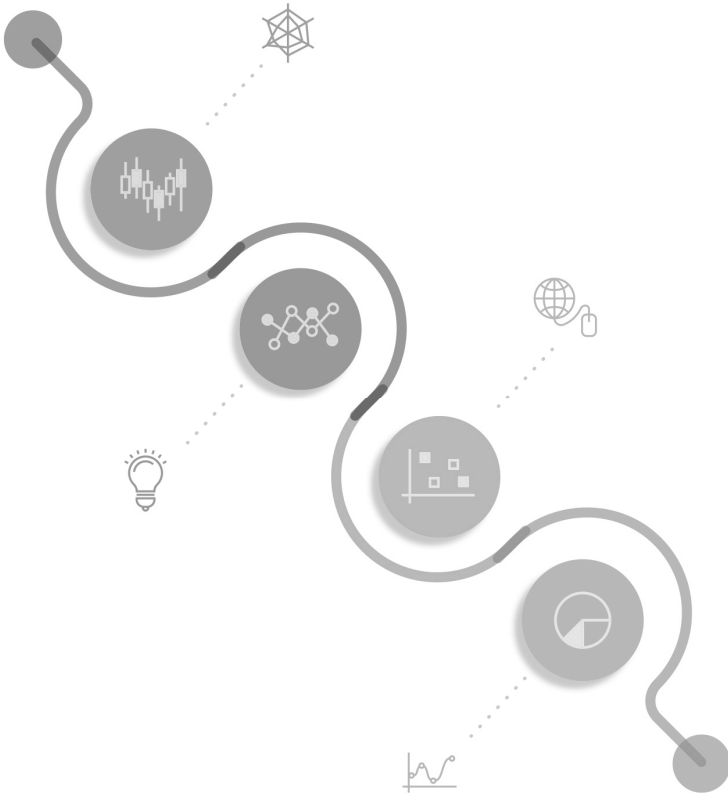
- 시행령 시행에 대한 기본 사항만 규정

<표 3-22> 부칙 비교표

시행령(현행)	시행령 개정안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제4장 결론

제1절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제2절 제언



제 4 장

결 론

제1절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대통령령 제 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원봉사 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봉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 ①「자원봉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자원봉사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2. 민간위원 : 자원봉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교육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 1인이 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되 행정안전부장관, 민간부위원장 순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부의된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자원봉사진흥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은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⑧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국가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4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실무위원 :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경찰청 및 소방청의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민간실무위원 :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민간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 1인이 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 중 민간실무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민간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부의된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 관련 국장은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⑦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자원봉사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행 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 이행결과와 제1 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확정된 후 이를 3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예게 전년도 시행계획과 그 시행계획의 이행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행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 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자원봉사단체 그 밖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 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법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 자원봉사활동 현황
2. 국내 자원봉사활동 관련 국민 인식
3. 국내외 자원봉사 관련 법·제도 현황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1주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제9조(포상)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대상자의 선정절차와 훈격은 「상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법 제16조에 따른 자원봉사주간은 자원봉사자의 날을 전후하여 1주일간으로 한다.

제11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보호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보호
3.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호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입원·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④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봉사자와 수요처 및 일감에 대한 정보제공
2. 자원봉사 관련 통계의 취합
3. 자원봉사자의 활동내용에 대한 인증
4. 그 밖의 자원봉사 관련 정보

제13조(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의 지정 등) ①법 제21조에 따른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기능개선·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집된 정보의 관리·가공 및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공
 3. 자원봉사센터 등의 통합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전담기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1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기관은 전문인력양성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1. 교육과정, 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②제1항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3. 교육 관련 인력 현황
4.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지정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자원봉사에 관한 연구역량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②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 간 자원봉사 관련 연구 실적
2. 자원봉사 전문연구인력 보유 현황
3. 그 밖에 자원봉사 정책 연구에 필요한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지정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전문연구기관의 지정 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국·공유재산의 사용)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행사에 관한 사업
2. 재난복구 및 구호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경우 국·공유재산을 사무실 용도로 대여·사용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대여·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국·공유재산의 무상대여나 사용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기부재산 접수 특례)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센터(같은 항 후단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자원봉사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자원봉사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자원봉사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회원 등)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자원봉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2.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
 - ②협회의 임원으로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5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 ③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④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임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및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⑥협회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 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 ②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 ③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지역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지역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②지역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④자원봉사센터의 임직원의 처우와 해고 등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⑤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군·자치구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시·군·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⑥시·도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도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7. 그 밖에 시·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⑦중앙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앙 단위 자원봉사기관·단체 및 기업과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국제교류
2. 지역 자원봉사센터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지원

3. 자원봉사 확산을 위한 홍보
 4. 자원봉사 정책이슈 개발 및 연구
 5. 자원봉사 기록물 발간 및 보존
 6.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
 7. 재난 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
 8. 자원봉사현장의 인권과 안전 보장
 9. 자원봉사 포상업무 지원
 10. 그 밖에 자원봉사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⑧지역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위임 및 위탁)

* 위임위탁조항은 현재로서는 위임위탁대상이 없으므로 미규정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공헌 인정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실적 정보를 수집(자원봉사활동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저장·보유·가공·제공(자원봉사활동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제2절 제언

- 본 연구는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위해 상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을 그 근거로 하여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목적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행령 각 조문은 기본법개정안의 각 조문을 근거로 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심의중인 기본법 개정안이 수정되거나, 다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관련 개정 내용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하위법령도 함께 수정되어야 할 것임
- 자원봉사 관련 법제도의 수립 및 개정은 시민사회 및 민간단체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자원봉사의 본래적 특성 때문에 그 법제도 개정을 위한 과정에서도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및 확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함
 - 본 연구 진행과정에서도 민간의 전문가 및 활동가와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는 등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안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절차를 거쳤음
 - 그러나 짧은 연구기간 등의 물리적 한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각 조문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를 이루는 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여 확정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행령 안을 토대로 추가적인 논의와 협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자와 참여자들의 의견수렴이 확대되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그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참고문헌】

- 국무총리실·한국자원봉사협의회(2010), 「국격제고를 위한 한국의 자원봉사 활성화방안 연구」.
- 이제훈(2008),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이후의 관변화 경향과 법 개정 방향”, 한국자원봉사포럼 국회공청회.
- 정진경(2013), “복지국가 맥락에서 스웨덴, 미국, 한국의 자원봉사정책 비교연구”, 「한국행정학보」, 47(2): 137-160.
- 정진경(2017), “『자원봉사진흥 제3차 국가기본계획』 정책영역별 주요 과제의 방향과 『부처간 협력모델』”, 제2회 국회자원봉사포럼 발제문.
- 조용혁(2015),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법제분석”, 「법제분석지원 Issue Paper」, 2015.
-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2008), 「자원봉사활동 관리 표준매뉴얼 개발 연구」.
- 행정안전부(2012),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2013~2017) 최종 연구보고서」.
- 행정자치부(2014),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행정자치부(2015), 「자원봉사 및 나눔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개선 연구」.
- 행정자치부(2015), 「2015년 자원봉사센터 현황」.
- 행정안전부(2017), 「자원봉사 진흥 『제3차 국가기본계획』(2018~2022) 수립 연구」.
- 행정안전부(2017),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활성화 방안 연구」.